

2020년도 제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: 2020. 6. 9.(화요일)
- 방 법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신창환 위원(분과위원장), 김연희 위원, 심장섭 위원, 최현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8건(안건번호 제2020-41025호~제2020-41124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전체 안전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안전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.
- B 위원: 안전번호 제2020-41025호~41124호의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방송) 198개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C 위원: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방송물을 불법으로 복제 전송 등을 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짐으로 이에 대한 경고 등 시정조치를 취함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.
- D 위원: 상기 안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이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함.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.

**2020년 제99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**

2020. 6. 9.

분과위원장 신창환

위원 김연희

위원 심장섭

위원 최현용